



권리 알아두기: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구금될 경우의 대응 방법 (합법적 영주권자 기준)

2025년 업데이트: 입국 심사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

모든 국제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합법적 영주권자(LPR, Lawful Permanent Resident)—일반적으로 그린카드 소지자라도 불림—은 공항이나 육로 입국 심사대에 도착할 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LPR은 비이민 신분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지만, 현재는 모든 비시민권자가 과거의 이민 관련 문제, 경찰과의 접촉 이력, 정치 활동 여부 등에 대하여 국경에서 더욱 강화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 영주권자 vs. 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미국에 도착하면, CBP는 귀하가 “재입국 영주권자(Returning resident)”인지 또는 “입국심사 대상의 외국인(Arriving alien)”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CBP가 귀하를 재입국 영주권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CBP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가 입국심사 대상의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분을 상실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미국 밖에서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경우;
- 미국을 떠난 후 때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한 경우;
-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한 경우;
- 이민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

추가 심사:

의문이 발생하여 CBP가 귀하의 입국을 즉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추가 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위해 별도의 구역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몇 분에서 몇 시간 또는 그 이상 대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심사 과정에서 CBP는 귀하의 미국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CBP는 질문을 하고 각종 조회를 실시하며, 귀하의 인적 정보 및 생체 정보(예: 지문 및 사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휴대전화, 노트북 또는 기타 전자기기가 수색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색에는 소셜미디어 활동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자기기는 일정 기간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기기 수색 안내문([Electronic Device Search Flye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BP가 귀하의 전자기기를 가져가는 경우 보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BP가 귀하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I-407 양식 관련 유의사항: 영주권 신분 포기

CBP는 귀하에게 I-407 양식 (합법적 영주권 신분 포기 서류,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이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I-407 양식은 반드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이민판사의 심리를 통해 ‘영주권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지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만을 이유로 LPR 신분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추방 재판에서 명백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로 영주권 포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경에서 CBP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귀하가 I-407 양식 서명을 거부할 경우, CBP는 귀하에게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해야 합니다.
- CBP가 귀하의 그린카드를 회수하는 경우, 귀하는 여권에 도장을 받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USCIS 예약](#)을 통해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아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금될 경우 알아 두어야 할 권리:

CBP가 귀하를 입국 불허 대상으로 판단하거나 귀하가 I-407 양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하룻밤 동안 구금되거나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사관은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P가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록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자문 없이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를 위해 작성된 모든 서면 진술서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질문 내용이나 제공된 문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민판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

CBP가 귀하를 추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는 이민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영주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CBP가 아니라** 이민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종교 또는 사회활동 관련 질문

CBP는 귀하의 정치적 신념, 단체 활동, 시위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보호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확인할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미한 범죄나 체포 이력을 포함하여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 USCIS 또는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신청이 있는 경우.
- 과거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CBP와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유의사항

- 변호사 및 자국 영사관의 연락처를 별도의 종이에 적어 여행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에게 여행 일정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두고, 도착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금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이민 변호사가 서명한 G-28 양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지원과 사건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변호사가 없으신 경우, www.aialawyer.com에서 면허가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 안내문의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